[별지 제11호서식] <신설 1999.5.11, 2006.5.12>

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			
건 축 주		주민등록번호	
주 소	(전화번호 :)		
대 지 위 치		지 번	
허가(신고)번호			
허가(신고)일자	년 월 일		
연장존치기간	년 월 일까지		
연 장 사 유			

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5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건축주 서명 또는 인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구 비 서 류			
없 음			
신 청 안 내			
제출하는 곳		처 리 부 서	
수 수 료		처 리 기 간	
근 거 법 규			
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5조제7항	축조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존치기간만료 7일 전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		

30304-26611민 210mm×297mm

98.12.28 제정승인 (보존용지(2종) 70g/㎡)